

변경



구 분	A-1	A-2	B-1	B-2	B-3	B-4	C-1	C-2	D-1	D-2	E	F-1	F-2	G	H	
건폐율	60%이하	60%이하	30%이하	30%이하	30%이하	60%이하	60%이하	60%이하	70%이하	70%이하	40%이하	40%이하	40%이하	60%이하	주거용 1.2~3.0%이하 주거용 3.0~5.0% 이하 주거용 5.0~10.0%이하 주거용 10.0~15.0%이하	
용적율	160%이하	160%이하	230%이하	200%이하	200%이하	200%이하	300%이하	200%이하	350%이하	350%이하	150%이하	200%이하	200%이하	200%이하	주거용 1.2~3.0% 이하 주거용 3.0~5.0% 이하 주거용 5.0~10.0%이하 주거용 10.0~15.0%이하	
높 이	지하층이하 상.중.상층(상.하.중.상층) 의 층수(상.중.상층) 10~13층(상.하.중.상층) 10~13층(상.하.중.상층)	지하층이하 상.중.상층(상.하.중.상층) 의 층수(상.중.상층) 10~13층(상.하.중.상층) 10~13층(상.하.중.상층)	지하층이하	주거용 1.2~3.0% 이하 주거용 3.0~5.0% 이하 주거용 5.0~10.0%이하 주거용 10.0~15.0%이하												
배 치 및 건축선	지하층이하 상.중.상층(상.하.중.상층) 의 층수(상.중.상층) 10~13층(상.하.중.상층) 10~13층(상.하.중.상층)	지하층이하 상.중.상층(상.하.중.상층) 의 층수(상.중.상층) 10~13층(상.하.중.상층) 10~13층(상.하.중.상층)	지하층이하	주거용 1.2~3.0% 이하 주거용 3.0~5.0% 이하 주거용 5.0~10.0%이하 주거용 10.0~15.0%이하												
허 용 조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비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구 분	입 인 권 자		결 정 권 자		
	작 성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주) 장 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직 위	상 무	-	지역개발담당	-	개발정책담당
직 명	특급기술자	시설주사	시설사무관	시설주사	시설사무관
성 명	김 용 일	김 병 철	장 경 학	문 영 속	김 병 용
확 인 인					

S = 1 : 1,500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대지내조경				
대지분할가능선	완충녹지	공공청사	가스공급설비				
보행자전용도로	경관녹지	학 교	철 도				
건축한계선	공 원	문 화 시 설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r><td>용적률</td><td>최고층수</td></tr> <tr><td>건폐율</td><td>최저층수</td></tr> </table>	용적률	최고층수	건폐율	최저층수
용적률	최고층수						
건폐율	최저층수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공지	주 차 장					

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